

제227회 임시회
2004. 5. 28(금)

심 사 보 고 서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

산업경제위원회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4년 4월 16일
- 회부일자 : 2004년 4월 16일

다. 상정 일자

- 제226회 임시회
 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4. 4. 22) 상정, 질의답변, 심사보류
- 제227회 임시회
 -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(2004. 5. 19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정 정 순)

가. 제안 이유

우리도의 기술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산·학·연·관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

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(재)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의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을 정함(제1조, 제2조)
- 지역기술혁신의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의 재산조성과 재정지원 근거를 정함(제3조, 제4조)
-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 재산 사용을 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-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을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제6조)
- 테크노파크의 업무지도와 예산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·지도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
- 테크노파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 할 수 있도록 함(제8조)
-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(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이 상 업)

- (재)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의 신기술개발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업기반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

항은 없음.
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연구개발사업,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, 신기술 창업 및 보육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,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, 효율적인 테크노파크사업 지원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그러나 금번에 제출된 충북테크노파크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단법인의설립 및 운영지원에관한 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 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수정 가결 ”

가. 수정이유

-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 법인의 사업명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단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명을 “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관한조례안”을 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”로 함.

○ 재단의 설립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해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함.

○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“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”를 삽입함.

○ 재단의 사업명 일부를 정비 함.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. 기 타 필 요 한 사 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칙

- ◎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- 충청북도지사제출
- ◎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- ◎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- ◎ 조문대비표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설립및운영) 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산·학·연·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
2.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
3.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
4.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
5.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
6. 시험생산사업
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8. 그 밖의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재산조성)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의 출연금 및 지원금
2. 도 및 시·군의 출연재산
3. 대학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4. 기타 차입금 및 수익금

제5조(재정지원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7조(업무의 위탁)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지도와 예산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)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기술 및 경영지도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재단법인의 운영)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제안년월일 : 2004년 5월 19일

제안자 : 정윤숙 의원의외

□ 제안이유

-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근거를 명확하게 하고, 법인의 각종 사업명을 정비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재단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명을 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을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으로 함.
- 재단의 설립 목적을 구체화 하기 위해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함.

-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“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”를 삽입 함.

- 재단의 사업명 일부를 정비 함.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제명을 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을 “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”으로 한다.

안 제1조 목적중 “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 테크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를 “제17조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”로 한다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2조(설립및운영)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.

안 “제2조 내지 제9조”를 “제3조 내지 제10조”로 한다

안 제3조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산·학·연·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
2.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사업
3. 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사업
4. 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사업
5.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사업
6. 시험생산사업

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운영 지원에관한조례안</p>	<p>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 지원에관한조례안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산업기술단지 지원에관한특례법</u>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종 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운영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제17조 및산업기 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신기술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북테크노파크(이하 “테크노파크” 라한다) 의 설립 및 운영·지원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
<p>< 신 설 ></p>	<p>제2조(설립및운영)충북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 다.</p>
<p>제2조(사업)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 업을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공동연구개발</u> 2. <u>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</u> 3. <u>산업기술 정보 유통 및 마케팅 지원</u> 4. <u>신기술 보육 및 창업지원</u> 5. <u>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</u> 6. <u>시험생산</u>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하는 사업 8. 그 밖의 테크노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	<p>제3조(사업)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산·학·연·관 등 공동연구개발사업 2.사업 3.사업 4.사업 5.사업 6.사업 7. 8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재산조성) 1~4(생략)	제4조(재산조성) 1~4(생략)
제4조(재정지원) ①~②(생략)	제5조(재정지원) ①~②(생략)
제5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(생략)	제6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(생략)
제6조(업무의 위탁)(생략)	제7조(업무의 위탁)(생략)
제7조(보고 및 검사 등)(생략)	제8조(보고 및 검사 등)(생략)
제8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)(생략)	제9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직)(생략)
제9조(재단법인의 운영)(생략)	제10조(재단법인의 운영)(생략)
부칙(생략)	부칙(생략)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

제17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

제22조(기술지도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

□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

제5조(기술기반조성사업)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(이하 “기술기반조성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
2. 산업정보의 모집·분석·유통의 촉진
3. 기술연구시설등의 확충
4.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
5. 신기술보육사업
6. 국제기술협력의 촉진
7. 기술력의 제고를 위한 경영 또는 기술의 진단·지도

8. 기술의 표준화

9. 개발기술의 이전·알선 및 개발성과의 확산

10. 기타 기술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·법인 및 단체등(이하 “주관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1. 국·공립연구기관

2.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

3. 산업기술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

4.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

5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기관

6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7.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

8. 기타 기술력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출연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97·1·13, 99·1·29 법5725>
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

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 지원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□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
제4조(설립허가기준)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 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(이하“각기본 재산”이라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 허가를 한다.

□ 민 법

제32조(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14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·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